

투자설명서 변경 내용

□ 대상펀드명 : 트러스톤 장기고배당 연금저축 증권투자신탁[주식]

□ 변경 사항: ① 책임운용인력 변경 (한규민 → 현혜정)

② 자본시장법 및 시행령 개정사항 반영

③ 기업공시서식 개정사항 반영

④ 집합투자기구의 투자위험 기재 보완

⑤ 반기 기준으로 갱신

□ 효력발생일: 2022. 10. 7.

□ 변경 내용

항 목	정정사유	정 정 전	정 정 후
투자결정시 유의사항 안내			
투자결정시 안내	유의사항 기업공시서식 작성기준 반영	10. 집합투자기구가 설정 후 1 년이 경과하였음에도 설정액이 50 억원 미만(소규모펀드)인 경우 분산투자가 어려워 효율적인 자산운용이 곤란하거나 임의해지 될 수 있으니, 투자 시 소규모펀드 여부를 확인해야 하며 소규모펀드 해당여부는 금융투자협회, 판매회사, 자산운용사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10. 집합투자기구가 설정 후 1 년(성과보수를 수취하거나, <u>고유재산 투자금이 일정 액 수 이상인 집합투자기구의 경우 2 년</u>)이 되는 날에 <u>설정액이 50 억원 미만인 경우 소규모펀드로서</u> 분산투자가 어려워 효율적인 자산운용이 곤란하거나 임의해지 될 수 있으니, 투자 시 소규모펀드 여부를 확인해야 하며 소규모펀드 해당여부는 금융투자협회, 판매회사, 자산운용사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요약정보			
투자비용	동종유형 총보수 최근 기준	2021. 9. 30. 기준	2022. 8. 31. 기준
투자실적 추이(연평균 수익률)	반기 기준으로 갱신	-	2022. 4. 27. 기준
운용전문인력	책임운용전문인력 변경	한규민	현혜정



트러스톤자산운용

	최근 기준으로 기재	2021. 10. 31. 기준	2022. 8. 31. 기준
투자자 유의사항	기업공시서식 작성기준 반영	집합투자기구가 설정 후 1년이 경과하였음에도 설정액이 50 억원 미만(소규모펀드)인 경우 분산투자가 어려워 효율적인 자산운용이 곤란하거나 임의해지 될 수 있 으니, 투자 시 소규모펀드 여부를 확인 하시기 바라며 소규모펀드 해당여부는 금융투자협회, 판매회사, 자산운 용사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집합투자기구가 설정 후 1년(성과보수를 수취하거나, <u>고유재산 투자금이 일정 액 수 이상인 집합투자기구의 경우 2 년</u>)이 되는 날에 <u>설 정액이 50 억원 미만인 경우 소규모펀드로서</u> 분산투자가 어려워 효율적인 자산운용이 곤란하거나 임의해지 될 수 있으니, 투자 시 소규모펀드 여부를 확인해야 하며 소규모펀드 해당여부는 금융투자 협회, 판매회사, 자산운용사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 습니다.
매입방법	자본시장법 및 시행령 개정사항 반영	15시30분 이전(경과후): 제2(3)영업일 기준가격으 로 매입	15시30분 이전(경과후): 2(3)영업일 기준가격으로 매입
환매방법	자본시장법 및 시행령 개정사항 반영	15시30분 이전(경과후): 제2(3)영업일 기준가격으 로 제4(4)영업일에 지급	15시30분 이전(경과후): 2(3)영업일 기준가격으로 4(4)영업일에 지급
제 2 부 집합투자기구에 관한 사항			
5. 운용전문인력	책임운용전문인력 변경	한규민	현혜정
가. 운용전문인력	최근 기준으로 기재	2021. 10. 31. 기준	2022. 8. 31. 기준
5. 운용전문인력	책임운용전문인력 변경	한규민	현혜정
가. 운용전문인력	최근 기준으로 기재	2021. 10. 31. 기준	2022. 8. 31. 기준
[이 투자신탁이 투자 하는 모투자신탁의 운 용전문인력]			
5. 운용전문인력	책임운용전문인력 변경	한규민	현혜정
나. 운용중인 집합투자 기구에 관한 사항	최근 기준으로 기재	2021. 10. 31. 기준	2022. 8. 31. 기준
5. 운용전문인력	책임운용인력 변경	한규민	한규민
다. 운용전문인력 최근 변경 내역		(운용기간 : 2020.04.14~ 현재)	(운용기간 : 2020.04.14~ 2022.10.06)

		〈신 설〉	<u>현해정</u> (운용기간 : 2022.10.07~ <u>현재</u>)
5. 운용전문인력 다. 운용전문인력 최근 변경 내역 [이 투자신탁이 투자 하는 모투자신탁의 운 용전문인력 최근 변경 내역]	책임운용전문인력 변경	<u>한규민</u> (운용기간 : 2020.04.14~ <u>현재</u>) 〈신 설〉	<u>한규민</u> (운용기간 : 2020.04.14~ <u>2022.10.06</u>) <u>현해정</u> (운용기간 : 2022.10.07~ <u>현재</u>)
8. 집합투자기구의 투 자대상 가. 투자대상 [이 투자신탁이 투자 하는 모투자신탁의 주 요 투자 대상]	자본시장법 및 시행령 개정사항 반영	<u>주택저당채권유동화회사법</u> 가) (생 략) 나) 다음에 해당하는 사유로 불가피하게 위의 5)~10)의 투자한도를 초과하는 경우에 는 초과일부터 3개월까지(부 도 등으로 처분이 불가능한 투자대상자산은 그 처분이 가능한 시기까지)는 그 투자 한도에 적합한 것으로 봄	<u>〈삭 제〉</u> 가) (현행과 같음) 나) 다음에 해당하는 사유로 불가피하게 위의 5)~10)의 투자한도를 초과하는 경우에 는 초과일부터 3개월까지(부 도 등으로 처분이 불가능한 투자대상자산은 그 처분이 가능한 시기까지로 하며, <u>금 용투자업규정 제4-54조2 규정에 의한 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재산의 경우는 6개 월까지(법 시행령 제81조제 3항제3호의 경우 이를 따른 다))</u> 는 그 투자한도에 적합 한 것으로 봄 ① ~ ⑤ (현행과 같음)
8. 집합투자기구의 투 자대상 나. 투자제한 [이 투자신탁이 투자 하는 모투자신탁의 주 요 투자제한]	자본시장법 및 시행령 개정사항 반영	<u>주택저당채권유동화회사법</u> <u>주택저당채권유동화회사법</u> <u>에 따른 주택저당채권유동 화회사</u> 다음의 해당하는 경우에는 투자비율을 적용하지 아니 함	<u>〈삭 제〉</u> <u>〈삭 제〉</u> 다음의 해당하는 경우에는 투자비율을 적용하지 아니 함

		(가) 다음에 해당하는 사유로 불가피하게 위의 2),3),4),5)의 투자한도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초과일 부터 3 개월까지(부도 등으로 처분이 불가능한 투자대상자산은 그 처분이 가능한 시기까지)는 그 투자한도에 적합한 것으로 봄 ①~⑤ (생략) (나) (생략)	(가) 다음에 해당하는 사유로 불가피하게 위의 2),3),4),5)의 투자한도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초과일 부터 3 개월까지(부도 등으로 처분이 불가능한 투자대상자산은 그 처분이 가능한 시기까지)로 하며, 금융투자업규정 제 4-54 조 2 규정에 의한 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재산의 경우는 6 개월까지(법 시행령 제 81 조제 3 항제 3 호의 경우 이를 따른다))는 그 투자한도에 적합한 것으로 봄 ①~⑤ (현행과 같음) (나) (현행과 같음)
10. 집합투자기구의 투자위험 나. 특수위험	집합투자기구의 투자위험 기재 보완	〈신설〉	<u>증권대여위험 : 이 투자신탁에서 보유하고 있는 자산을 대여할 경우, 중개회사 및 거래상대방의 시스템 및 운영 오류나 거래상대방의 파산으로 인해 자산의 회수가 적시에 이루어지지 않아 투자신탁의 투자자산 매매가 원활히 이루어지지 않을 수 있으며, 이로 인한 투자자는 기회비용 부담과 투자원금액 손실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u> <u>증권차입위험 : 이 투자신탁의 운용 전략에 따라 투자증권을 차입할 경우, 차입자산을 공매도(short selling)하여 해당 자산의 반환 시점에 예상과 달리 그 자산의 가치가 급등하게 되면, 매도시점보다 높은 가격으로 매</u>

			수함으로 인해 그 차액(매도가-매수가)만큼 투자원금액 손실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10. 집합투자기구의 투자위험 다. 기타 투자위험	자본시장법 시행령 개정 사항 반영	집합투자기구 해지의 위험 : 수익자 전원이 동의한 경우, 투자신탁의 수익증권 전부에 대한 환매의 청구를 받아 신탁계약을 해지하는 경우, 투자신탁(존속하는 동안 투자금을 추가로 모집할 수 있는 투자신탁으로 한정한다)을 설정한 후 1년이 되는 날에 원본액 50억원 미만인 경우 또는 투자신탁(존속하는 동안 투자금을 추가로 모집할 수 있는 투자신탁으로 한정한다)을 설정하고 1년이 지난 후 1개월간 계속하여 투자신탁의 원본액이 50억원 미만인 경우 집합투자업자가 투자신탁을 해지하는 등의 사유로 투자자의 동의 없이 투자신탁이 해지될 수 있습니다.	집합투자기구 해지의 위험 : 수익자 전원이 동의한 경우, 투자신탁의 수익증권 전부에 대한 환매의 청구를 받아 신탁계약을 해지하는 경우, 투자신탁(존속하는 동안 투자금을 추가로 모집할 수 있는 투자신탁으로 한정한다)을 설정한 후 1년(성과보수를 수취하거나, <u>고유재산 투자금이 일정 액수 이상인 집합투자기구의 경우 2년</u>)이 되는 날에 원본액 50억원 미만인 경우 또는 투자신탁(존속하는 동안 투자금을 추가로 모집할 수 있는 투자신탁으로 한정한다)을 설정하고 1년(성과보수를 수취하거나, <u>고유재산 투자금이 일정 액수 이상인 집합투자기구의 경우 2년</u>)이 지난 후 1개월간 계속하여 투자신탁의 원본액이 50억원 미만인 경우 집합투자업자가 투자신탁을 해지하는 등의 사유로 투자자의 동의 없이 투자신탁이 해지될 수 있습니다.
11. 매입, 환매, 전환 절차 및 기준가격 적 용기준 가. 매입	자본시장법 및 시행령 개정사항 반영	3) 매입청구시 적용되는 기준가격 ① 15시 30분[오후 3시 30분] 이전 자금을 납입한 경우 : 자금을 납입한	3) 매입청구시 적용되는 기준가격 ① 15시 30분[오후 3시 30분] 이전 자금을 납입한 경우 : 자금을 납입한

	영업일로부터 <u>제2영업일</u>에 공고되는 수익증권의 기준가격 적용 ② 15시 30분[오후 3시 30분] 경과 후 자금을 납입한 경우 : 자금을 납입한 영업일로부터 <u>제3영업일</u>에 공고되는 수익증권의 기준가격 적용 ③ (생략)	영업일로부터 <u>2영업일</u>에 공고되는 수익증권의 기준가격 적용 ② 15시 30분[오후 3시 30분] 경과 후 자금을 납입한 경우 : 자금을 납입한 영업일로부터 <u>3영업일</u>에 공고되는 수익증권의 기준가격 적용 ③ (현행과 같음)
11. 매입, 환매, 전환 자본시장법 및 시행령 절차 및 기준가격 적 개정사항 반영 용기준 나. 환매	2) 환매시 적용되는 기준가격 및 환매대금 지급시기 ① 15시 30분[오후 3시 30분] 이전 환매를 청구한 경우 : 환매를 청구한 날로부터 <u>제2영업일</u>에 공고되는 수익증권의 기준가격을 적용하여 <u>제4영업일</u>에 환매금액 지급 ② 15시 30분[오후 3시 30분] 경과 후 환매를 청구한 경우 : 환매를 청구한 날로부터 <u>제3영업일</u>에 공고되는 수익증권의 기준가격을 적용하여 <u>제4영업일</u>에 환매금액 지급	2) 환매시 적용되는 기준가격 및 환매대금 지급시기 ① 15시 30분[오후 3시 30분] 이전 환매를 청구한 경우 : 환매를 청구한 날로부터 <u>2영업일</u>에 공고되는 수익증권의 기준가격을 적용하여 <u>4영업일</u>에 환매금액 지급 ② 15시 30분[오후 3시 30분] 경과 후 환매를 청구한 경우 : 환매를 청구한 날로부터 <u>3영업일</u>에 공고되는 수익증권의 기준가격을 적용하여 <u>4영업일</u>에 환매금액 지급
12. 기준가격 산정기준 및 집합투자재산의 평가 가. 기준가격의 산정 및 공시	<u>대차대조표</u>	<u>재무상태표</u>

13. 보수 및 수수료에 관한 사항	동종유형 총보수 최근 기준으로 기재	2021. 9. 30. 기준	2022. 8. 31. 기준
나. 집합투자기구에 부과되는 보수 및 비용	기업공시서식 작성기준 반영	주 3) 증권거래비용은 회계 기간이 경과한 경우에는 직 전 회계연도의 증권거래비용을 추정치로 사용하며, 회계 기간이 경과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다른 클래스의 증권 거래비용을 추정치로 사용하였으며 총보수비용에 포함되지 아니하였습니다. <신 설> [직전 회계연도 : 2020.10.28~2021.10.27] <신 설> <신 설>	주 3) 증권거래비용은 회계 기간이 경과한 경우에는 직 전 회계연도의 증권거래비용을 추정치로 사용하며, 회계 기간이 경과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다른 클래스의 증권 거래비용을 추정치로 사용하였으며 총보수비용에 포함되지 아니하였습니다. <u>이 투자 신탁에서 직전 회계연도에 발생한 증권거래비용은 1,491,993 원입니다.</u> [직전 회계연도 : 2020.10.28~2021.10.27] <u>* 증권거래비용에 포함되는 항목 : 주식·채권·수익증권·파생상품·기타 증권 등 자산매매수수료 등 (단, 세 부지출내역은 펀드별로 상이 할 수 있습니다.)</u> <u>주 6) 금융비용은 총보수비용에 포함되지 아니하였으며, 직전 회계연도에 금융비용은 발생하지 않았습니다.</u> [직전 회계연도 : 2020.10.28~2021.10.27]
제 3 부 집합투자기구의 재무 및 운용실적 등에 관한 사항			
1. 재무정보	반기 기준으로 갱신	-	2022. 4. 27. 기준
2. 연도별 설정 및 환매 현황	반기 기준으로 갱신	-	2022. 4. 27. 기준
3. 집합투자기구의 운용실적	반기 기준으로 갱신	-	2022. 4. 27. 기준
제 4 부 집합투자기구 관련회사에 관한 사항			

1. 집합투자업자에 관한 사항	최근 기준으로 기재	<u>2021. 10. 31. 기준</u>	<u>2022. 8. 31 기준</u>
1. 집합투자업자에 관한 사항	최근 기준으로 기재	<u>제 23 기(2020.12.31)</u> <u>제 22 기(2019.12.31)</u>	<u>제 24 기(2021.12.31)</u> <u>제 23 기(2020.12.31)</u>
다. 최근 2 개 사업연도 요약 재무내용			
1. 집합투자업자에 관한 사항	최근 기준으로 기재	<u>2021. 10. 31. 기준</u>	<u>2022. 8. 31. 기준</u>
라. 운용자산 규모			
3. 집합투자재산 관리 회사에 관한 사항(신탁업자)	자본시장법 및 시행령 개정사항 반영	(1) 주요업무 (생략) - 집합투자업자의 집합투자 재산 운용지시에 대한 감시 업무, 투자신탁재산 평가의 공정성 및 기준가격 산정의 적정성 여부 등의 확인업무	(1) 주요업무 (현행과 같음) - 집합투자업자의 집합투자 재산 운용지시에 대한 감시 업무, 투자신탁재산 평가의 공정성 및 기준가격 산정의 적정성 여부, <u>투자신탁재산 명세서와 신탁업자가 보관·관리 중인 집합투자재산의 내역이 일치하는지 여부</u> 등의 확인업무
6. 채권평가회사에 관한 사항	사명 변경	<u>KIS 채권평가주식회사</u>	<u>KIS 자산평가주식회사</u>
가. 회사개요			
제 5 부 기타 투자자보호를 위해 필요한 사항			
1. 투자자의 권리에 관한 사항	자본시장법 및 시행령 개정사항 반영	(3) 수익자총회 결의사항 <u>제 5 영업일</u>	(3) 수익자총회 결의사항 <u>5 영업일</u>
가. 수익자총회 등			
2. 집합투자기구의 해지에 관한 사항	자본시장법 시행령 개정 사항 반영	(1) 집합투자업자는 아래의 경우 금융위원회의 승인을 받지 않고 투자신탁을 해지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집합투자업자는 그 해지사실을 지체 없이 금융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합니다.	(1) 집합투자업자는 아래의 경우 금융위원회의 승인을 받지 않고 투자신탁을 해지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집합투자업자는 그 해지사실을 지체 없이 금융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합니다.
나. 임의해지		① ~ ② (생략)	① ~ ② (현행과 같음)

	③ 투자신탁(존속하는 동안 투자금을 추가로 모집할 수 있는 투자신탁으로 한정한다. 이하 같다)으로서 설정한 후 1년이 되는 날에 원본액이 50억원 미만인 경우 ④ 투자신탁을 설정하고 1년이 지난 후 1개월간 계속하여 투자신탁의 원본액이 50억원 미만인 경우	③ 투자신탁(존속하는 동안 투자금을 추가로 모집할 수 있는 투자신탁으로 한정한다. 이하 같다)으로서 설정한 후 1년(<u>법 시행령 제81조제3항제1호의 집합투자기구의 경우에는 설정 이후 2년</u>)이 되는 날에 원본액이 50억원 미만인 경우 ④ 투자신탁을 설정하고 1년(<u>법 시행령 제81조제3항제1호의 집합투자기구의 경우에는 설정 이후 2년</u>)이 지난 후 1개월간 계속하여 투자신탁의 원본액이 50억원 미만인 경우
	(2) ~ (3) (생략)	(2) ~ (3) (현행과 같음)
3. 집합투자기구의 공 자본시장법 시행령 개정에 관한 사항 나. 수시공시	(2) 수시공시 투자신탁이나 투자익명조합의 집합 투자업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이 발생한 경우 이를 지체 없이 집합투자업자·판매회사·협회의 인터넷 홈페이지 공시 그리고 집합투자업자·판매회사의 본·지점, 그 밖의 영업소 게시 및 전자우편을 이용하여 공시하여야 합니다. ① ~ ⑦ (생략) ⑧ 투자신탁(존속하는 동안 투자금을 추가로 모집할 수 있는 투자신탁으로 한정한다. 이하 같다)으로서 설정 이후 1년이 되는 날	(2) 수시공시 투자신탁이나 투자익명조합의 집합 투자업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이 발생한 경우 이를 지체 없이 집합투자업자·판매회사·협회의 인터넷 홈페이지 공시 그리고 집합투자업자·판매회사의 본·지점, 그 밖의 영업소 게시 및 전자우편을 이용하여 공시하여야 합니다. ① ~ ⑦ (현행과 같음) ⑧ 투자신탁(존속하는 동안 투자금을 추가로 모집할 수 있는 투자신탁으로 한정한다. 이하 같다)으로서 설정 이후 1년(<u>법 시행령</u>

에 원본액이 50억원 미만인 경우 그 사실과 해당투자신탁이 법 제192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해지될 수 있다는 사실

⑨투자신탁이 설정되고 1년이 지난 후 1개월간 계속하여 원본액이 50억원 미만인 경우 그 사실과 해당 투자신탁이 법 제192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해지될 수 있다는 사실

⑩ (생략)

제81조제3항제1호의 집합투자기구의 경우에는 설정 이후 2년)이 되는 날에 원본액이 50억원 미만인 경우 그 사실과 해당투자신탁이 법 제192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해지될 수 있다는 사실

⑨투자신탁이 설정되고 1년(법 시행령 제81조제3항제1호의 집합투자기구의 경우에는 설정 이후 2년)이 지난 후 1개월간 계속하여 원본액이 50억원 미만인 경우 그 사실과 해당 투자신탁이 법 제192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해지될 수 있다는 사실

⑩ (현행과 같음)
